

#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C, 기업형IRP)

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	담당	책임자

전 산 인 자 란

## 1. 가입자정보

20 년 월 일

기업명	퇴직연금 계좌번호	제도구분	<input type="checkbox"/> 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성명	생년월일	임원여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원
입사일자	중간정산일자	퇴직급여 입금총액	*기업이 가입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총 금액

## 2 퇴직급여 지급정보

퇴직일자	* 마지막 근무일 기재	예약지급일*	
지급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의무)	현물이전** (후선의리필수)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유의사항 확인후 서명 필수)
	<input type="checkbox"/> 입출금계좌	IRP의무이전 예외사유	<input type="checkbox"/> 만55세이후 퇴직 <input type="checkbox"/> 300만원이하 퇴직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사망 <input type="checkbox"/> 한시적 체류자격외국인의 출국
잔여부담금***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_____ 원)	잔여부담금 연동출금	<input type="checkbox"/> 동의(사전에 약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동의(기업별도입금)
기업반환신청	<input type="checkbox"/>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급여 한도금액 :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전환금 : _____ 원 * 임원 퇴직급여 한도금액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지급시 상품매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시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예약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현물이전은 당행 개인형IRP로 급여이전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예약지급일 지정 및 잔여부담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잔여부담금 미입금시 지급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3. 현물이전 유의사항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지급완료 전일자의 평가금액으로 확정되며, 개인형IRP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예시] DC 적립액이 1억원, 평가금액이 7천만원인 상태에서 개인형IRP로 현물이전 시 퇴직소득세는 7천만원으로 확정됩니다.  
개인형IRP로 현물이전 후 손실이 회복되더라도 7천만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됩니다.
-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물이전 처리됩니다.  
위 현물이전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입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4. 중간정산(합산과세) 특례 적용

합산과세 적용시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출하며 기 납부된 퇴직소득세를 차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에 해당 퇴직급여 이외에 회사 (또는 당행 외 타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합산적용 필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이전에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합산과세 적용	<input type="checkbox"/> 합산과세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합산과세 적용 시 작성	가산월수	제외월수

## 5. 입금 받는 계좌정보

개인형IRP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입출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입출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개인적립금이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과세제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 지급 지연 시 퇴직자 동의서

본인의 기업(사용자)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자 : \_\_\_\_\_ 서명 또는 (인)

본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 내용 및 가입자의 퇴직 내용, 퇴직금 계산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기업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가입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

-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 : 근로자 또는 가입자
-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급여지급 신청 금액에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단,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
  - \*\*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 연 20%

**[ 제출 서류 ]**

1. 타 금융기관으로 받는 경우	타 금융기관 IRP 통장사본(가입확인서) 또는 입출금계좌 사본
2. 합산과세 적용하는 경우	회사(또는 타금융기관)에서 중간정산 시 발생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망 퇴직하는 경우	1) 대표수익자 지정 합의서(은행양식) 2) 대표수익자 퇴직급여 수령계좌 통장사본 (입출금계좌) (단, 대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통장사본) 3)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확인서(필요시) 4)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및 인감증명서 5)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자 기업 반환	아래 양식 중 한가지 1)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근로복지공단] 3)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상기의 서류 제출시 퇴직근로자의 자격취득일(입사일) 및 상실일(퇴직일) 기재 필수

